

가원요양원 급여이용정보제공

사업목적

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입소시켜 24시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개인의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고 만족스러운 입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.

시설개요

시설명	가원요양원	시설구분	노인요양시설
시설장	김 명 선	장기요양기관번호	1-30110-00265
소재지	대전 동구 우암로351	설립일	2017.01.04
건물구조	철근콘크리트	방 개 수	11개

※ 별표 1. : 시설기준

대지면적: 348.9㎡

연면적: 690.58㎡

구분 시설별	침실	사무실	상담실	휴게실	간호사실	특별침실	물리치료실	프로그램실	식당및조리실	세면실 (2층)	화장실 (2.3층)	비상 재해 대비 시설	세탁 장
	11	1	1	1	1	1	1	1	1	1	2	1	1
노인요양시설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2. 직원현황

요양원	시설장	사회복지사	협력병원 (촉탁의)	간호(조무)사	요양보호사	조리원
배치기준 30명 미만	1명	1명	협력병원	1명	2.3명당 1명	1명
현재인력	1명	2명	새봄요양병원 목*군	2명(겸직)	12명	1명
근무체계	시설에서 정한 복합근무체계					

3. 수급자 현황

정원	현원		급여종류
28	남	5	시설급여
	여	21	
	계	26	

4.보험가입여부

보험내용	보험사
전문인배상책임보험	한화손해보험
영업배상	한화손해보험
화재,가스보험	현대해상
승강기보험	메리츠보험

5.건물현황

구 분	시설현황
지상 4층	물리치료실,간호사실,생활실(3),화장실,프로그램실
지상 3층	생활실(5),화장실(1),세탁실(1),주방
지상 2층	프로그램실,생활실(3),화장실(2)
지상 1층	사무실,상담실,특별침실,휴게실,화장실

가원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7조(계약목적)

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중풍,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수급자에게 급식, 요양,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8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본원과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과의 쌍방 간의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.
- ② 정원 내 단기보호로 입소한 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3개월에 도달하는 일자 또는 단기보호 계약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까지 한다.
- ③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까지 존속한다. 단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비용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9조(계약의 해제)

- ①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(통고)한다.
 1.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·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
 2. 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 3. 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력이 없으며,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
 4.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대만 할 경우
 5. 본원의 건물, 부대시설, 또는 대지 등을 고의, 중대한 과실로 오손, 파손, 멸실 하였을 경우
 6.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
 7.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 8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- ② 입소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(대리인)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(별표11호 서식)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.

제20조(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)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.
- ② “입소자”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()등급, 급여수가 ()원의/일로 해당연도 보건복지가족 부의 고시 수가를 따르며,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본원도 이에 따른다.
- ③ 시설급여 비용은 월 31일일 경우와 30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. 일급여수가()원 $\times$ 31일 $\times$ 20% = ()원, 일급여수가 ()원 $\times$ 30일 $\times$ 20% = ()원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.
- ④ 비급여 비용은 식재료비와 간식비 등을 포함하여 1식 2,200원으로 하며, 일할 계산한다.
- ⑤ 본인부담금 총합계는 급여비용+비급여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.
-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입소자본인(또는 대리인)의 요구가 있을시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(또는 대리인)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.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월 이용한도	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금	80%	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%중 80%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
자부담	본인부담금	20%(일반)	보험공단 80%, 개인부담금 20%.
	본인부담금	12%(경감)	보험공단 88%, 개인부담금 12%
	본인부담금	8%(경감)	보험공단 92%, 개인부담금 8%
	식사재료비	1일/1식2,200원	1일 / 3식
비고	상급침실 이용료: 해당없음		

제21조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3.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·외출에 관한 권리
4. 입소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입소자의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8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 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9. 입소자의 급여 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10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11. 시설의 협약,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지정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
2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업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5. 입소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 질 의무

제22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① 원장은 물가 변동 즉 식재료비, 관리비, 난방비, 공공요금,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입소비용을 개정할 때에는 “시설운영위원회”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정하되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4. 아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본 시설에 입소 시는 수급자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직원의 직계존속 일 경우 감면 (직원 복리 후생 혜택)
 - 관할 동사무소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의 감면 권고 시 감면
 - 그 외 가정형편이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감면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,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한다.

제23조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.

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

식사관리, 배설관리, 목욕관리, 구강관리, 두발관리, 손·발 관리, 세면관리, 회음부 관리, 옷 갈아입히기, 체위변경, 수면관리, 이동요양 등

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

일상편의대행, 의사소통지원, 여가지원(프로그램서비스) 등

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

건강관찰 및 확인, 투약관리, 치매관리, 간호 및 처치, 호스피스, 응급구호, 외래진료 및 입·퇴원 관리, 예방관리, 협약기관 진료 등

④ 프로그램활동 지원서비스 : 인지활동, 여가활동, 사회적응활동

⑤ 기능회복훈련 지원서비스

일상생활동작훈련, 신체기능훈련, 인지·정신기능 훈련 등

입소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원은 시설급여(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, 기능 평가 및 훈련, 치매관리지원, 응급지원, 시설환경관리, 간호처치 등)을 제공하며,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(또는 대리인)에게 부담 할 수 있다.

⑥ 가족지원 : 보호자 상담 및 교육, 보호자 간담회 등

제24조(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)

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가. 입소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
1.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시설이용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

2.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 수급자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
3.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,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.

4. 합숙용(2인용~4인용)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 (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)

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
1.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(산소공급, 석션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
2.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3.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(②,③항은 준비 중)
4.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 전 조항 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하되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한다.

③ 임종 및 장례절차,유류금품처리

1.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
 - 가.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.
 - 나.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임 .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- 다.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을 하였을 경우,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 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 하여 준 후 시신인도를 한다.
2. 장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.
 - 가.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 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.
 - 나.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, 유류품 등을 제고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.
 - 다. 시설장은 2일장(24시간)을 원칙으로 한다.
 - 라. 시설장의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비근무 직원 등이 야간빈소를 관리한다.
 - 마.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해 처리한다.
 - 바. 시설장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납골당에 안치한다.
 - 사. 무연고의 경우 동(면)사무소에 사망신고서,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.

제6장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및 시설물 이용

제25조 (의료서비스 처리절차)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1.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2. 입소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3. 간호(조무)사는 입소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4. 간호(조무)사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②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 진료에 관한 사항

1. 협약 의료기관의 계약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2. 계약의사의 건강상태 진료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)를 취한다.
3.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4.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1. 입소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2.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 -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.
 -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 -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수급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3.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 - 생활수급자에게 낙상, 질식, 경련, 화상,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 시 모든 임직원은 본원의 “응급상황 대응 지침서”에 의하여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합병증 및 2차 손상 등을 예방한다.
 - 응급처치와 병원에 후송 조치함과 동시에 → 간호(조무)사 → 원장 → 보호자 등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한다.
4.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 -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 - 입소수급자의 병원진료(정기, 수시)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.
 -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.

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-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-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제26조(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)

- ① 본원은 시설관리 규칙을 정하고 관리를 하며 입소 수급자는 이를 준수한다.
- ② 본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입소하신 수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,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, 손괴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(또는 대리인)와 합의하여 처리한다.

제27조(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)

- ① 서비스 제공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와 본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본원이 부담한다.
- ②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, 자해, 자살, 무단이탈, 본인의 과실, 병사, 도난, 폭력 또는 외출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원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③ 단, 본원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장 입소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

제28조(책임)

- ① 시설장은 입소된 수급자를 보호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케어 하여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신분보장과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소속직원은 담당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④ 시설장은 모든 종사자들이 외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29조(수급자 권리와 참여)

- ①. 입소된 수급자와 직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불이익 또는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상황을 의뢰하고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원장의 명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설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④ 입소된 수급자는 “수급자는 다 옳다”는 거주자주권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 받으며, 그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타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는 제한 할 수 있다.
- ⑤ 입소된 수급자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⑥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⑦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⑧ 시설 내.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
- ⑨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.

- ⑩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.
- ⑪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.
- ⑫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.
- 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.
- ⑭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- ⑮ 시설 입· 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.
- ⑯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과정에 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보장한다.
- ⑰ 서비스제공과정, 조사연구과정에 수급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.

제30조(의무)

- ① 입소된 수급자와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시설내외의 질서유지와 시설물의 관리·보존할 의무가 있다.
- ② 입소수급자와 직원은 시설 내에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.
- ③ 시설장은 입소수급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생활적응과정 및 보건위생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 본 시설은 시설의 장, 직원, 가족대표, 입주자대표,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시설의 장은 입주자의 상황,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후원금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결과가 시설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시설의 장은 입소수급자의 가족 또는 직원, 기타 타인으로부터 입소수급자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복지지원팀에서는 연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⑧ 시설의 장은 수급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직원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⑨ 수급자에게 노동의 내용과 강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그것이 설령 치료적 목적의 노동이라 할지라도 참여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, 사전공지와 동의를 구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노동행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,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.
- ⑩ 수급자가 타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이용하고 싶은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.
- ⑪ 수급자의 욕구와 선호도, 기능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 자료수집과 사정을 실시하여 수급자 개개인별로 사례관리(care management)계획을 수립하고, 계획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그리고 정기적 재 사정을 통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, 이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⑫ 계약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처방이 없이 수급자의 이상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해서는

안 되며, 수급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복용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.

- 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소시키거나 서비스 참여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, 경비의 마련을 위하여 외부 후원금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전원 또는 퇴소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- ⑭ 목욕,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수급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관리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.
- ⑮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신체구속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⑯ 신체적 구속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통지 하여야 한다.
- ⑰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와 기록은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. 특히 시설 입소 수급자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거나, 컴퓨터상의 수급자 정보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지 않거나, 서류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⑱ 시설 홍보물이나 인터넷상의 사진, 동영상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 특히 기초생활 수급권 수급자의 경우 항의할 가족이 없다고 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
- ⑲ 수급자가 자유롭게 시설의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
- ⑳ 수급자가 우편이나 소포의 발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하며, 수급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.
- ㉑ 수급자에게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을 선호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안 되며,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리하여서는 안 된다.
- ㉒ 정원 초과나 전염병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어떤 사유로도 시설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.
- ㉓ 입소 후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,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, 가족 또는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.
- ㉔ 수급자를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 되며, 권리의 주체로서 의식주, 보건의료 서비스,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시설급여)



공정거래위원회
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 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	등 급 (인정 번호)	
	생 년 월 일		연 락 처	자택) 휴대폰)
	주 소			
	기 타	☐ 일반 ☐ 40%감경대상자 ☐ 50%감경대상자 ☐ 60%감경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(50%) 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(60%)		
제공자 (을)	시 설 명	가원요양원		시 설 종 류 노인요양시설
	대표자 성명	여경희	연 락 처	042-625-2904
	주 소	(34536)대전 동구 우암로 351 (가양동, 가양동 50-25) 가원요양원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	관 계	
	생 년 월 일		연 락 처	자택) 휴대폰)
	주 소			

제1조 【 목적 】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 감경, 비급여 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- ⑥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⑦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 3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

제3조 【 입소·이용료 납부 】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. (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(으)로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 (1일) -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
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요양급여	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84,240	78,150	73,800	73,800	73,800
	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	0	92,260	85,080	85,080	85,080
	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	0	83,040	76,560	76,560	76,560
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71,010	65,890	60,740	60,740	60,740
비급여	상급침실비(1인실 1박)	0 원				
	상급침실비(2인실 1박)	0 원				
	식재료비(1식)	2,200 원				
	간식비1식	0 원				
	경관유동식월	0 원				
	이/미용료(월)	0 원				

※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(이하 "외박비용"이라 한다)하되, 1회당 최대 10일(1개월에 15일)까지 산정할 수 있다.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>

구분	시설급여
일반	20 %
기초수급권자	0 %
기타 의료수급권자	8 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12 % , 8 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부담금)

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